

전주지방법원 2022. 11. 9 선고 2021가단144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

담당변호사 김학수, 이창현, 한지영, 황정열, 김정범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철, 송도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하영

변 론 종 결 2022. 9. 21.

판 결 선 고 2022. 11. 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8. 2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. 9. 1. 접수 제96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0. 6. 22. 주식회사 D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합니다)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전기요금 채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60,851,000원, 피보험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C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.

나.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개월 후인 2020. 7.부터 피보험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요금채무이행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, 한국전력공사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20. 10. 27. 한국전력공사에게 60,851,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.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C에 대하여 60,851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다.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조립업, 의료부품 제조 및 조립업, 사출 성형업, 금형설계업, 실크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이다.

라. 연대보증인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전기요금채무를 연체하고 있던 중인 2020. 8. 26.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0. 9. 1. 접수 제9655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).

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연대보증금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연대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전기요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한국전력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연대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는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바 연대보증보험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의 담당직원은 C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서명하게 하였는바 연대보증보험계약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(1)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 C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인수한 피담보채무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 내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

(2) 판단

살피건대, 피고는 2021. 5. 20.경 C와 협의이혼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20. 8. 26.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갑 제6,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C와 피고의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2020. 4. 20.경 체결된 C의 임대차계약서(을 제1호증)를 제출하나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으로 당시 피고가 C와 별거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,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기요금도 연체하였고 E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,8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자신 명의의 자동차도 2020. 10. 12. 피고에게 명의이전등록을 해 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C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, 피고는 2021. 5. 25.에서야 C의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고, C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.

(3) 소결론

따라서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또한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주문 제1의 나.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김영희

